

나무병원

■ 업무내용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복구하는 사업(산림보호법)

■ 등록기준

1. 자본금

| 법인 | 개인 |
|--------|----|
| 1억원 이상 | 불가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관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2. 기술능력

| 종류 | 범위 | 기술자격 |
|----|--------------------|--|
| 1종 | 수목진료 |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1명 이상 2. 2020년 6월 28일 이후: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
| 2종 | 수목진료중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 |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수목치료기술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2020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등 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3. 시설·장비

| 사무실 |
|--|
|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
|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